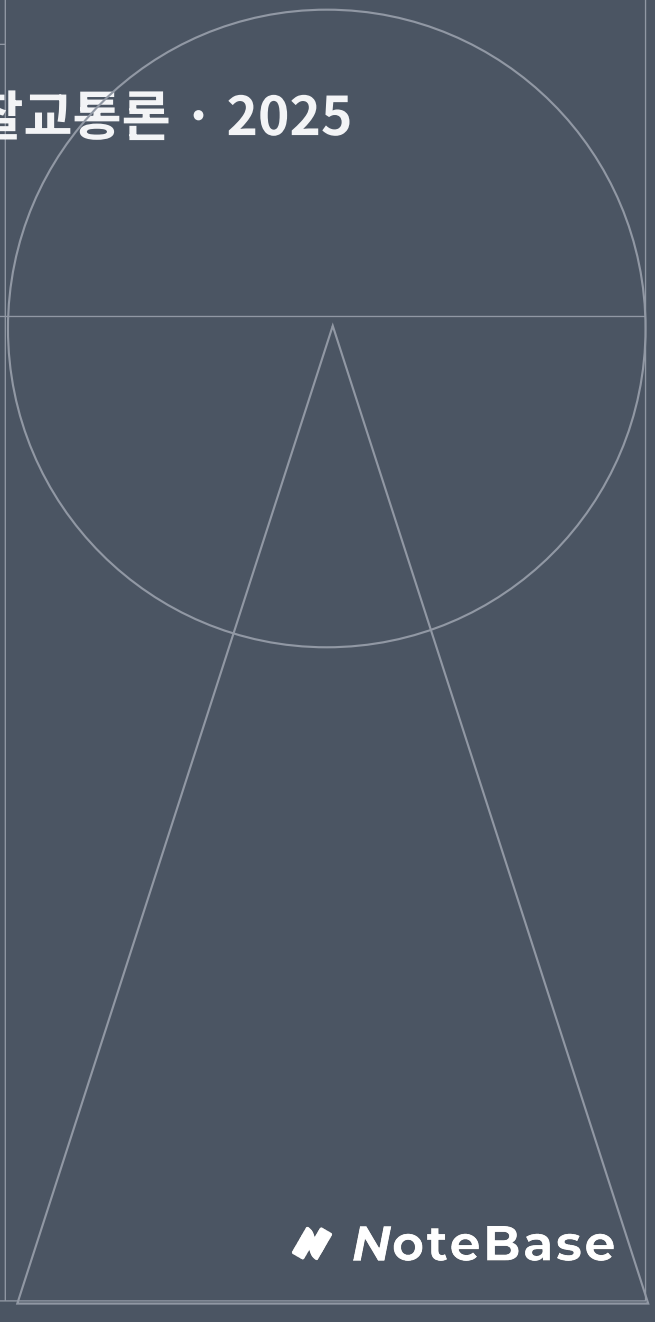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5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5

문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함)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②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④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정답 1번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대상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NoteBase

③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NoteBase

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차량 신호의 종류 및 뜻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황색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적색 등화에 차마는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으면 좌회전할 수 있다.

③ 황색 등화 점멸에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④ 적색 등화 점멸에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황색 등화라도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가 진입하였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gdMRkMUC63_-8Nu6-d4WDT7893EbyAo5/view?usp=drivesdk

②

비보호좌회전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는 **녹색 등화**이다. 적색 등화에서는 정지해야 하므로 비보호좌회전표지나 표시만으로 좌회전할 수 없다.

https://drive.google.com/file/d/1ZsRjdxWWr_gBVyhNZSB6lA60-ADTtO8d/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zovvbSS_4Q9Z00Jx4uiXpvaLSRCWj9_T/view?usp=drivesdk

③

황색 등화가 점멸하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s1hT8XkBhXVeiOaVOoYQg_-Iiu60Z1p-/view?usp=drivesdk

④

적색 등화가 점멸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EPxluAFhUWe3ilE1KqdLkaXyjW4iw2ru/view?usp=drivesdk

NoteBase

문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노면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4m 미만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횡단보도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각선횡단보도표시에서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은 횡단보도에 포함된다.

③ 고원식횡단보도표시는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폭이 **4m 미만인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1jCA_yL-00zWaPtyfF6wwpRh2bwOiwZd/view?usp=drivesdk

②

대각선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표시 사이의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tEWTw0L2cJNj0IjN7FBEiUIszOhov_YW/view?usp=drivesdk

③

고원식횡단보도표시는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선지의 50km/h는 잘못된 기준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hECyBGCBOK_rfG8WW3PxbK3lahov8Sje/view?usp=drivesdk

NoteBase

④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으면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 · 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2.4.26, 2016.11.29, 2020.12.31, 2022.10.20>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4.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상 교통안전표지의 표지병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는 상호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설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표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병설해서는 안된다.

② 지주형태가 정주식인 경우, 동일면에서 종방향일 때 중요한 표지를 하부로부터 설치해야 한다.

③ 지주형태가 내민식 및 문형식인 경우, 동일면에서 횡방향일 때 중요한 표지를 도로의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지주형태가 부착식인 경우, 중요한 표지를 도로의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주식으로 표지를 세로 병설할 때에는 중요한 표지를 **상부로부터** 설치한다. 내민식·문형식의 가로 배치와 부착식은 중요한 표지를 **도로 중앙선 측**에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로 관련 없는 주의·규제·지시표지를 한 지주에 함께 설치하면 정보가 복잡해져 운전자의 판독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종류의 표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함께 설치하지 않는다.

② X: 정주식 표지를 같은 면에 세로로 병설할 때에는 중요한 표지를 **상부로부터** 설치해야 한다. 하부부터 중요도 순으로 배치한다는 설명은 위아래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다.

③ O: 내민식 및 문형식 표지를 같은 면에 가로로 병설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표지를 **도로 중앙선 측**에 설치한다. 정주식의 세로 배치와 달리, 가로 배치에서는 중앙선 쪽을 중요 표지의 우선 위치로 정한다.

④ O: 다른 시설물에 부착하는 부착식도 중요한 표지를 **도로 중앙선 측**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중요 표지의 배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5. 「교통사고조사규칙」상 용어의 정의 및 사상자 구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사고에서 사망이란 해당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

②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③ 부상자를 병·의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예외없이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부터 최단거리 병원 순으로 후송한다.

④ 사망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보관한다.

정답 3번

①

대형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사망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대형사고는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NoteBase

③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부터 최단거리 병원 순으로 후송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특정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따라서 '예외없이' 후송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5조(사상자 구호)
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상자의 응급구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되 사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부상자를 병ㆍ의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특정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부터 최단거리 병원 순으로 후송

④

사망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관련자의 입회하에 목록을 작성**하여 그 목록과 함께 보관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5조(사상자 구호)
②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사망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보관

NoteBase

문 6.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경찰서장이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 수집·정비하여야 하는 기초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이륜차 판매·수리업체

② 일반·고속열차 운행 시간표

③ 고속·시외·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④ 자동차 유리·부속품 판매점 대장

정답 2번

②

평소 수집·정비하는 운행 시간표는 **고속·시외·시내버스 운행 시간표**이며, 일반·고속열차 운행 시간표는 열거된 기초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0조(수사체제 확립 등)
②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 · 정비하여야 한다.
9. 고속 · 시외 ·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③

경찰서장이 뺑소니 사고 수사에 대비해 평소 수집·정비해야 할 기초자료에는 **고속·시외·시내버스 운행 시간표**가 포함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0조(수사체제 확립 등)
②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 · 정비하여야 한다.
9. 고속 · 시외 ·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NoteBase

문 7.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정식 단속용 장비는 자동차등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고정식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경찰청장에게 서면 통보한다.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도난·파손 및 단속표지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순찰 점검을 실시한다.

④ 위반영상을 해상한 시·도경찰청장은 위반차량의 고용주등에게 위반영상을 해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정답 3번

①

고정식 단속용 장비를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하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37조
제37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등) ① 고정식 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자동차등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같다.

②

시·도경찰청장이 고정식 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 **설치 예정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경찰청장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37조
② 시·도경찰청장은 고정식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통보하고, 설치 완료 후에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 없이 입력한다.
1. 설치 또는 이전 예정일시 장소
2.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3. 설치 또는 이전의 필요성

NoteBase

③

장비의 도난·파손 및 단속표지판 등을 확인하는 순찰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선지의 '매 분기마다'는 점검 주기를 잘못 제시한 것이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39조
제39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점검 및 검사)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도난 · 파손 및 단속표지판 등을 점검하기 위한 월 1회 이상 순찰 점검을 실시한다.

④

위반영상을 해상한 시·도경찰청장이 위반차량의 고용주등에게 **해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사전에 전자문서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송신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41조
제41조(위반차량 처리) ① 시·도경찰청장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단속한 위반차량의 영상을 그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위반영상을 해상하여 TCS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영상을 해상한 시·도경찰청장은 위반차량의 고용주등에게 위반영상을 해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실과 의견진술기회 및 과태료 사전납부를 알리는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전에 고용주등이 전자문서 등으로 송신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송신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서의 발송명의는 위반차량 고용주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NoteBase

문 8.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및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에 포함된다.

②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④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에 포함**되어 보호받는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 앞에서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NoteBase

③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량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12.22>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NoteBase

문 9.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상 신호기 설치방법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주식 신호등은 신호현시의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위치적으로 가장 좋다.

② 중앙주식 신호등은 신호를 다현시로 운영할 경우 설치 불가하다.

③ 지주와 부착대를 이용한 신호등은 풍압 등 외부 동하중에 대해서도 견고하게 지탱 가능하다.

④ 지주와 부착대를 이용한 신호등은 도로폭이 매우 넓은 경우 차량제어를 하고자 하는 차로 위에 설치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중앙주식은 **신호현시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위치로는 불리**하다는 것이 편람의 설명이다. 설치의 용이성이나 외관상 장점과 혼동하면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중앙주식은 설치·보수가 비교적 쉽지만, **신호현시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위치로는 불리하다.** 특정 조건에서 외관이나 시인성이 양호하다는 장점과, 현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가장 좋다는 평가는 서로 다르다.

② O: 편람은 중앙주식의 설치 고려사항으로 **다현시 운영 시 설치 불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신호 운영 방식이 해당 설치방식에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③ O: 지주와 부착대를 사용하는 방식은 신호등을 내민 구조의 부착대에 고정한다. 편람에서는 바람 등에 따른 동적인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든다. 물론 실제 구조는 필요한 하중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O: 부착대를 길게 뻗을 수 있는 범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로가 매우 넓으면 목표 차로 바로 위에 신호등을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이 방식의 단점이다.

따라서 중앙주식의 위치상 단점을 반대로 설명한 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및 통행차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하며,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③ 자전거, 우마,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운행되는 것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고속도로 편도 5차로에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5차로에서만 통행하고, 앞지르기를 할 경우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차로의 순위는 **중앙선 쪽부터 1차로**로 정하고,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왼쪽부터 1차로**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NoteBase

③

자전거와 우마, 그 밖에 사람·가축의 힘이나 다른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10. 2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비고

6.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등

나. 우마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NoteBase

④

고속도로 편도 5차로에서 대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지정차로인 오른쪽 차로는 **4차로와 5차로**이다. 앞지르기할 때에는 **지정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Mqyfon0B_kgpMrK-RKO-4QJBjeJaP-3/view?usp=drivesdk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10. 2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NoteBase

문 11. 「도로교통법」상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교통이 밀리는 상태에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행위
③ 위험방지를 위해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는 행위
④ 도로 보수·유지 작업 자동차가 도로의 위험 방지·제거를 위해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

정답 1번

①

모범운전자는 경찰보조자이므로 **교통정리 중 내리는 신호·지시도 준수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1. 모범운전자

NoteBase

②

교통 정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속도위반의 예외**이다. 이러한 서행은 난폭운전의 기초가 되는 속도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③

위험방지를 위한 급제동은 급제동 금지의 예외이다. 급제동 금지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난폭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NoteBase

④

도로 보수·유지 작업 자동차가 **고속도로등의 위험 방지·제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하는 유턴은 허용**된다.
이 경우 유턴 금지 위반이 아니므로 난폭운전의 기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NoteBase

문 12.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조사관이 결정하는 1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순위에 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과실이 (㉠)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 차대사람 사고는 (㉢)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① ㉠ 경한 ㉡ 중한 ㉢ 보행자
② ㉠ 중한 ㉡ 경한 ㉢ 운전자
③ ㉠ 중한 ㉡ 경한 ㉢ 보행자
④ ㉠ 중한 ㉡ 중한 ㉢ 운전자

정답 2번

㉠

차대차 사고에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가 다르면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의4(당사자 순위의 결정)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1.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

차대차 사고에서 당사자 간 과실이 동일하면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의4(당사자 순위의 결정)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2.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의4(당사자 순위의 결정)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차대사람 사고는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경찰서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음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법정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이미 장착한 차량에는 중복 장착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NoteBase

③

안전운행기록은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상대방을 경찰서장으로 한 부분이 틀렸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 · 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④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NoteBase

문 14.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도로공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로봇 신호수를 배치하되, 안전요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③ 야간에 안전요원은 신호봉을 사용하여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④ 고속도로의 경우 안전요원은 최소 2명 이상을 배치하고, 감속 운행이 시작되는 지점인 공사구간 전방 100미터 지점과 300미터 지점에 배치한다.

정답 4번

①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 규모와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②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로봇 신호수를 배치하며, 로봇 신호수에도 **안전요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제42조의2 관련)
가. 로봇 신호수 :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배치하되, 안전요원과 같은 복 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상 · 하로 움직여 신호하도록 한다.

③

안전요원은 수신호와 함께 **주간에는 깃발, 야간에는 신호봉**을 사용하여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을 유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제42조의2 관련)
나. 임무 : 수신호와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사용하여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 고, 안전을 유도한다.

NoteBase

④

고속도로에서는 공사구간 전방 **60미터에서 90미터까지의 지점에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전방 500미터 부근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선지의 100미터와 300미터는 배치 기준과 다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제42조의2 관련)
가. 배치 : 최소 1명 이상을 감속운행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전방 60미터에서 90미터까지의 지점을 말한다)에 배치하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전방 500미터 부근에 추가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다만, 도심의 도로에서는 주변 교 통상황 등에 따라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경찰서장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공구조물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거하도록 하거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등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④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서장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거 또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몰라 직접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매우 곤란하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NoteBase

③

인공구조물 등의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비밀로 매각하지 않으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 **제거·운반·보관·매각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 · 운반 · 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난 사람
③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정답 2번

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NoteBase

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중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다. 정지기간이 끝난 사람은 이 사유에 따른 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2. 제93조제1항제1호 · 제5호 · 제5호의2 · 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었더라도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 · 제5호 · 제5호의2 · 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oteBase

④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NoteBase

문 17.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주취운전자 단속 및 음주측정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속과정에서 운전자가 음주감지된 경우에는 감지 직후 단속 경찰관의 이름과 단속된 차량번호를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무전으로 보고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②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주취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귀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피단속자가 음주가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단속 현장을 벗어나서 측정할 수 없다.

정답 4번

①

음주감지 직후 **단속경찰관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112 종합상황실에 무전으로 보고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29조
③ 단속과정에서 운전자가 음주감지된 경우에는 감지 직후 단속경찰관의 이름과 단속된 차량번호를 112 종합상황실에 무전으로 보고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단속수치 미달, 정지, 취소 등만 보고하고 측정수치는 제외)와 측정자 및 참여자의 성명을 112 종합상황실에 무전으로 보고한다.

②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인된 경우** 음주스티커·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피단속자를 귀가하게 할 수 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29조
⑥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주취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음주스티커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귀가하게 할 수 있다.

NoteBase

③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피단속자가 측정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29조
⑦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피단속자가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 후 지체없이 교통조사기능에 단속자료와 신병을 인계한다.

④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측정이 불가능하면 112 상황실에 이동사실과 사유를 보고하고 경찰서·지역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30조
④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2 상황실에 이동사실 및 그 사유를 보고하고 경찰서⊠지역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통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서, 범칙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1조로 발부한다.

② 통고서에 범칙금액을 수기로 기록할 때에는 인식하기 쉽게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록한다.

③ 범칙금의 1차 납부기간은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 되는 날까지며, 납부 최종일이 은행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처리한다.

정답 2번

①

통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범칙금 영수증서·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한 조로 함께 발부**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 · 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

NoteBase

②

통고서를 수기로 발부할 때 범칙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록**한다. 숫자로만 기록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12조
② 교통법규을 위반한 사람에게 통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기로 발부할 경우 펜을 사용하여 묵서로 동시에 기록하되 통고서에 범칙금액을 기록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기준으로 기록하되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동시에 기록[예시 60,000원(육만원)] 할 것

③

1차 납부기간은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 되는 날까지**이다. **납부 최종일이 은행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13조
제13조(범칙금 납부기한 등) 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 되는 날까지를 1차 납부기간으로, 1차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를 2차 납부기간으로 기산하여 처분한다. 다만, 범칙금 납부 최종일이 은행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는 이를 접수·처리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17조
제17조(이의신청) ①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 · 처리한다. 이때, 신청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NoteBase

문 19.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한다.

③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④ 운전면허증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을 기재한다.

정답 3번

①

음주운전 금지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위반 전력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부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NoteBase

④

조건부 운전면허증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을 기재**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4. 12. 12.>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제54조제3항, 제54조의2제1항 및 제61조 관련)

3. 음주운전 관련 조건

비고

운전면허증에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을 기재한다.

NoteBase

문 20.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관서장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교통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년 이상인 공무원을 위촉한다.
· 경찰관서장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 위원회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 10 ㉡ 2 ㉢ 6
② ㉠ 8 ㉡ 3 ㉢ 6
③ ㉠ 10 ㉡ 3 ㉢ 8
④ ㉠ 8 ㉡ 2 ㉢ 8

정답 1번

㉠
공무원 위원의 자격은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이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⑥ 시 · 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인 공무원

NoteBase

ㄴ

박사학위 취득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⑥ 시 · 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ㄷ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⑧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NoteBase